

2021년 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

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」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1년 2월 24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

1. 사업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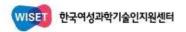
- 과학기술 R&D 분야 재직자의 출산·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, 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
- 미취업·경력복귀희망 과학기술인에게 R&D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(재)취업 지원

2. 지원 개요

- 가. 지원 내용 :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- **인건비 지원** :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

구분	학・석사	박사
정부지원금 최대 2,100만원/연 (175만원/월)		최대 2,300만원/연 (191.6만원/월)
기준연봉 2,800만원/연 3,000만원/연		3,000만원/연

-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,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**기준연봉** 이상의 금액 지급
-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(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) ※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**교육훈련** :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참여기관은 대체인력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



나. 지원 규모: 80명 내외

% 협약신청(후보군 선정 \rightarrow 매칭완료 후)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

다. 지원 방법 및 기간

○ 지원 유형 :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(중복신청 불가)

① 휴직제형 : 출산, 육아,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

② 단축제형 : 임신, 육아, 가족돌봄, 건강,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**근로시간**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

※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: 주 15~35시간,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
-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
-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(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)
-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

○ 지원 기간 :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

구분	① 휴직제형	② 단축제형	비고
사전 인수인계기간	0~2개월	0~2개월	
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(B)	3~15개월	3~12개월	해당 기간 내
사후 인수인계기간	0~2개월	불가	자율 설정
총 지원기간(A+B)	3~15개월	3~12개월	

※ 각 차수별 협약일 기준,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 **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**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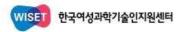
※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

라. 지원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

마. 신청 일정

구분	사전*	1차	2차	3차	4차
신청 기간	_	3.2~3.31	4.12~5.31	6.1~7.31	8.1~9.30
적격성평가 및 후보군 선정	-	4.14	6.16	8.13	10.15
협약신청접수	3.2~3.24	4.15~4.30	6.17~6.30	8.16~8.31	10.18~10.30
협약시작일	4.01	5.01	7.01	9.01	11.01

- ※ 2차 신청은 2021. 4. 12.부터 접수받음(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)
- ※ 후보군으로 선정된 후, 선정된 차수 외에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
- ※ 사전 협약은 2020년 선정된 후보군 기관 및 인력에 대해 진행함



3.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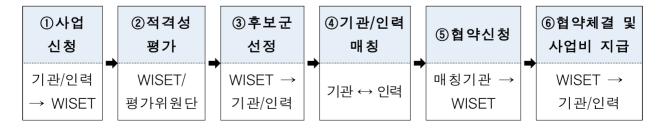
가. 대체 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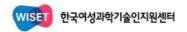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
 - ※ 의·약학, 치의학,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(단, 수행업무가 R&D 관련 업무이어야 함)
 - ※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
 - ※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
- 2021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
나. 참여 기관

- R&D분야 재직자 중 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(예정)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(예정)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
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 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 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 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신용평가 등급이 **B0 이상**인 기관
 - ※ 대학, 공공연구기관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 제외

4. 지원 절차 ※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



① 사업 신청

※ 기관과 대체인력 모두 사업신청 후 후보군에 선정되어야 함

○ 신청기간 : 2021. 9. 30.까지 상시 접수

구분	사전*	1차	2차	3차	4차
신청 기간	_	3.2~3.31	4.12~5.31	6.1~7.31	8.1~9.30
적격성평가 및 후보군 선정	-	4.14	6.16	8.13	10.15
협약신청접수	3.2~3.24	4.15~4.30	6.17~6.30	8.16~8.31	10.18~10.30
협약시작일	4.01	5.01	7.01	9.01	11.01

- 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※ 사전 협약은 2020년 선정된 후보군 기관 및 인력에 대해 진행함

○ 신청방법 : W브릿지 사이트(www.wbridge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- %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\rightarrow 일자리 \rightarrow 대체인력지원 \rightarrow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※ 2차 신청은 2021. 4. 12.부터 접수

○ 제출서류

- 참여 기관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신청공문	-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(자체양식) ※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	
2	사업신청서	- 서명 또는 날인 필수(PDF 형태로 제출)	
3	사업자등록증 사본	_	
4	벤처기업확인서,	- 참여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(택1) ※ 공공연, 대학 제외	필수
5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- 유효기간 이내의 발급본 제출 ※ 공공연, 대학,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인 기 업 제외	
6	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- 2018~2020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국세청 또는 회계사(세무사) 확인(원본/날인) - 2020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8~ 2019년 재무제표 제출 ※ 공공연, 대학 제외	
7	가점 증빙서류	여성기업확인서 사본가족친화인증서 사본중소기업확인서 사본※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	해당 시

- 참여 인력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사업신청서	- 서명 또는 날인 필수(PDF 형태로 제출)	
2	졸업증명서 사본	-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	
3	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	-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 발급 ※ 개인 로그인→증명원 신청/발급→보험구분 고용, 조회구분 사용 선택→조회→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출력 ※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벌사업장) 또는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인정 -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(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) - 화면 캡쳐본 불인정 - 채용예정인 경우 선정 후 협약 시 제출	필수
4	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	-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발급 -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 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 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	
5	경력증명서	-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	해당
6	기타	-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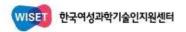
○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
- 공문 및 사업신청서 등에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

② 적격성 평가

-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,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
- 전문가 평가 기준 ※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 - 신청 인력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지원 필요성	-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유 -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	30
업무역량	-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-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	30
역량개발 계획	-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계획의 구체성 - 개인의 R&D분야 발전 가능성	40
	100	



- 신청 기관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관 역량	- R&D 수행규모 및 R&D 투자의 우수성 - R&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	40
인력활용 계획	-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-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	
근로환경	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복지제도) 등 -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	
	합계	100
	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	1
	기관이 지방(서울, 경기, 인천 외의 지역)기업인 경우	1
	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	1
 가점	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	2
716	기관이 미래산업분야*인 경우	2
	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	2
	사업 수혜인력 고용유지 기관(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)	1

* 미래산업분야: 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,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

③ 후보군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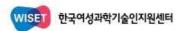
-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기관 및 인력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
- 후보군의 유효기간은 **2년**(~2022.12월)이며, 유효기간 이내에 **재신청 불필요** ※ 단.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군에서 제외
-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후보군에서 제외된 경우, 다시 사업 신청 및 후보군 선정 후 사업 참여 가능

④ 기관/인력 매칭 진행 (사전 매칭 완료 시 생략 가능)

○ 후보군 등록 후, 해당 후보군 내에서 기관/인력이 자율적으로 매칭 진행

⑤ 협약신청

- 매칭 완료 후 각 **차수별 협약 신청 기간**에 WISET에 협약신청 ※ 후보군으로 선정된 후, 선정된 차수 외에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
- 협약신청 접수 기준으로 지원하며,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



⑥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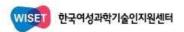
○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인력 교체 가능(최초 협약기간 및 지원금 변경 불가)

5.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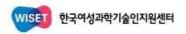
- 채용한 대체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(12개월 이상 채용 시) 필수
-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
- 정부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-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지원센터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
 -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,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,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
 -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
- 참여기관 및 인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1회에 한함)

6. 문의처

-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&D경력복귀지원팀
 - 02-6411-1064, 1011 / jhjang@wiset.or.kr, hhkim@wiset.or.kr,



○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,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.



참고 1

정부지원금 산정 안내

□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: 학·석사 2,100만원/연, 박사 2,300만원/연

-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 - 정부지원금 :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(1년 기준)
 - 기준연봉 :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 초과 가능)

<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>

구분	학・석사	박사	
정부지원금	최대 2,100만원/연 (175만원/월)	최대 2,300만원 (191.6만원/월)	
기준연봉	2,800만원/연	3,000만원/연	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- ※ 협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, 협약기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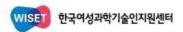
□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

-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,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
 -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≥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
 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A(석사)의 연봉이 2,900만원일 경우
 - → 석사의 기준연봉이 2,8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
 - → 정부지원금 2.100만원 전액 지급

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<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

[계산식]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전일제 근무 시 연봉

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B(박사)의 연봉이 2,800만원일 경우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,500만원)
 - ightarrow 박사의 기준연봉이 3,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
 - →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\times 정부지원금 전액 = $\frac{2,800만원}{3,500만원} \times 2,300만원 = 1,840만원$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)



참고 2

신청 자격요건

□ (인력) 동등학력 인정 요건

-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- 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,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-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,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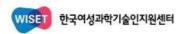
□ (기관)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

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3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4. 국공립연구기관
- 5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- 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- 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6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

참고 3

신청 제한 사항

□ 신청 제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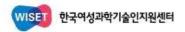
- 기관 제한 사항
 -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
 - '인턴'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 - 다음의 '신청제외 기관'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기관 제외)

< 신청제외 기관 >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○ 인력 제한 사항

- 동 사업(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)으로 기 지원 받은 자 ※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, 협약해약한 자 포함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 - ※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: 워크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
 - 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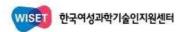


○ 신청기관의 기관장(사업주)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< 친족관계>

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】 *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

- 1. 6촌 이내의 혈족
- 2. 4촌 이내의 인척
-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- 임금체불,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<u>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</u>한 기관은 풀에서 제외하며,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



참고 4 2021년 사업 연간일정

절차	내용	수행주체
사업 공고	· 신규 참여기관 및 인력 모집 공고	WISET
1		
사업 신청	· 신청서 접수(온라인) · www.wiset.or.kr/wedodream	참여기관 및 인력
1		
적격성 평가 및 후보군 선정	· 선정결과 및 풀 등록 승인 통보	WISET 평가위원단
1		
협약체결	· 참여 기관에서 WISET에 신청	참여기관
사업비 지급	·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	WISET
1		
	·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	
사업 수행	·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등	참여기관 및 인력
_	· 대체인력 및 휴직자 대상 교육 실시	
•		
중간점검 및 현장점검	·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	WISET
1		
사업비 정산	· 사옹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	WISET

- ※ 지원 절차는 각 차수별 진행
- 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